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8.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안 제2. 3. 5) (2)

- ④, 제2. 3. 5) (3) ①, 제2. 3. 5) (3) ②, 제2. 3. 5) (3) ③, 제2. 3. 5) (3) ⑤, 제2. 3. 5) (3) ⑥, 제2. 3. 5) (3) ⑦, 제2. 3. 5) (6) ⑧, 제2. 3. 5) (8), 제2. 3. 5) (10), 제5. 10, 제5. 11. 11-2 4) (2), 제8. 1. 1.2 1.2.2 다 허), 제8. 2. 2.2 2.2.1 2.2.1.2, 제8. 2. 2.2 2.2.1 2.2.1.3 1), 제8. 2.

- 2 -

- 2.2 2.2.1 2.2.1.9 1), 제8. 2. 2.2 2.2.1 2.2.1.10 가, 제8. 2. 2.2 2.2.1 2.2.1.14 가 1), 제8. 2. 2.2 2.2.1 2.2.1.14 나 1), 제8. 2. 2.2 2.2.1 2.2.1.14 다 1), 제8. 2. 2.2 2.2.1 2.2.1.15 가, 제8. 2. 2.2 2.2.2 2.2.2.5 다 7) 가), 제8. 2. 2.2 2.2.2 2.2.2.7 가 1), 제8. 2. 2.2 2.2.2 2.2.2.8 가 1), 제8. 2. 2.2 2.2.2 2.2.2.10 가 1), 제8. 2. 2.2 2.2.2 2.2.2.12 2.2.2.12.4 가, 제8. 2. 2.2 2.2.2 2.2.2.12 2.2.2.12.5 가, 제8. 2. 2.2 2.2.2 2.2.2.12 2.2.2.12.6 가, 제8. 2. 2.2 2.2.2 2.2.2.12 2.2.2.12.7 가, 제8. 2. 2.2 2.2.2 2.2.2.13 가, 제8. 2. 2.2 2.2.2 2.2.2.14 가 1), 제8. 2. 2.2 2.2.2 2.2.2.14 나 1), 제8. 2. 2.2 2.2.2 2.2.2.15 가 1), 제8. 2. 2.2 2.2.2 2.2.2.16 가, 제8. 9. 9.2 9.2.2 가, 제8. 9. 9.2 9.2.2 마 3), 제8. 9. 9.2 9.2.2 바 1) 마), 제8. 9. 9.2 9.2.3 가, 제8. 9. 9.2 9.2.6 가, 제8. 9. 9.2 9.2.6 마 5), 제8. 9. 9.2 9.2.6 바 1) 바), 제8. 9. 9.2 9.2.9 가]

- 1)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 필요
- 2)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아전기용, 영아후기용, 성장기용 조제유와 조제식으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 3) 국제적으로 월령별 영양요구량을 고려한 영·유아제품 분류 개편 추이 및 국제기준과 조화
- 4) 성장시기에 따른 영양을 제공하는 조제유와 조제식의 공급기반 마련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418) 피레트린, (433) 피카부트라족스]

-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반영 필요
- 2) 피레트린, 피카부트라족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에 적합하도록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대용의 용도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 (1) 원료는 식품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모든 원료는 깨끗하고 우수한 품질로 영·유아가 섭취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해야 하며,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 (1) 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 (2) 열에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류나 용해가 잘 되지 않는 무기질류를 살균 전에 용액에 첨가할 경우에는 비타민의 파괴율 및 무기질의 용해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3) 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 (4)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포장·충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무균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5)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0000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3. 5) 중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을 각각 “조제유류”와 “조제식류”로 한다.

제5. 10 중 하단 정의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을 “조제식류”로 한다.

제5. 10 중 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1 조제유류

1) 정의

조제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육

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단,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6) 직접 응용하는 액상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준으로 하며,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 (7) 액상 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미생물 또는 다른 오염원의 예방하기 위하여 분말형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관련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 (9) 제품 포장 전에 외부 물질이나 금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적 방법, 즉, 체, 트랩, 자석, 전기적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4) 식품유형

(1) 영아전기용 조제유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하여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영아후기용 조제유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유아기용 조제유

5) 규격

항 목	유 형	영아전기용 조제유		영아후기용 조제유		유아기용 조제유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1) 열량 (kcal/100 mL)		60~70		60~70		60~70	
(2) 수분(%)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3) 조단백질 (g/100 kcal)		1.8~3.0		1.8~3.0		1.8 이상	
(4) 조지방 (g/100 kcal)		4.4~6.0		4.4~6.0		3.5 이상	
(5) 리놀레산 (mg/100 kcal)		300 이상	1400	300 이상	1400	300 이상	
(6) α-리놀렌산 (mg/100 kcal)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7)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5:1~15:1		5:1~15:1		-	
(8) 탄수화물 (g/100 kcal)		90~140		90~140		12.5 이하	
(9) 유성분 (g/100 kcal)		12.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10) 비타민 A (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60~180 또는 200~600		75~180 또는 250~300		75~180 또는 250~600	
(11) 비타민 D (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1.0~2.5 또는 40~100		1.0~2.5 또는 40~100		1.5~4.5 또는 60~180	
(12) 비타민 C (mg/100 kcal)		10.0 이상	30 (단, 액상 제품은 70)	10.0 이상	30 (단, 액상 제품은 70)	10.0 이상	
(13) 비타민 B ₁ (μg/100 kcal)		60 이상	300	60 이상	300	40 이상	
(14) 비타민 B ₂ (μg/100 kcal)		80 이상	500	80 이상	500	80 이상	
(15) 나이아신 (μg/100 kcal)		300 이상	1500	300 이상	1500	400 이상	
(16) 비타민 B ₆ (μg/100 kcal)		35 이상	175	35 이상	175	45 이상	(단,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조과 단백질 1 g당 최소한 비타민 B ₆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17) 엽산 (μg/100 kcal)		10.0 이상	50	10.0 이상	50	10.0 이상	(단,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조과 단백질 1 g당 최소한 비타민 B ₆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항 목	유 형	영아전기용 조제유		영아후기용 조제유		유아기용 조제유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18) 판토텐산 (µg/100 kcal)		400 이상	2000	400 이상	2000	300 이상	
(19) 비타민 B ₁₂ (µg/100 kcal)		0.1 이상	1.5	0.1 이상	1.5	0.15 이상	
(20) 비타민 K ₁ (µg/100 kcal)		4.0 이상	27	4.0 이상	27	4.0 이상	
(21) 비오틴 (µg/100 kcal)		1.5 이상	10	1.5 이상	10	1.5 이상	
(22) 비타민 E (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		0.5 이상 또는 0.7 이상 또는 7.0	5.0 또는 7.0	0.5 이상 또는 0.7 이상 또는 7.0	5.0 또는 7.0	0.5 이상 또는 0.7 이상 (다만, 리놀렌산 1 g 이상인 경우 리놀렌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23) 나트륨 (mg/100 kcal)		20~60		20~60		20~85	
(24) 칼륨 (mg/100 kcal)		60~180		60~180		80 이상	
(25) 칼슘 (mg/100 kcal)		50~160		50~160		55 이상	
(26) 칼륨 (mg/100 kcal)		50 이상	140	50 이상	180	90 이상	
(27) 인 (mg/100 kcal)		25 이상	100	25 이상	100	60 이상	
(28) 마그네슘 (mg/100 kcal)		5.0 이상	15	5.0 이상	15	6.0 이상	
(29) 철 (mg/100 kcal)		0.45 이상 (철분강화제품의 경우 1.0 이상)		1.0~2.0		1.0~3.0	
(30) 요오드 (µg/100 kcal)		10.0 이상	60	10.0 이상	60	5.0 이상	
(31) 구리 (µg/100 kcal)		35 이상	120	35 이상	120	-	
(32) 아연 (mg/100 kcal)		0.5 이상	1.5	0.5 이상	1.5	0.5 이상	1.5
(33) 망간 (µg/100 kcal)		1.0 이상	100	1.0 이상	100	5.0 이상	
(34) 셀레늄 (µg/100 kcal)		1.0~9.0		1.0~9.0		9.0 이하	
(35) 불소 (µg/100 kcal)		100 이하		-		-	
(36) 콜린 (mg/100 kcal)		7.0 이상	50	-	50 ¹⁾	-	50 ¹⁾
(37) 카르니틴 (mg/100 kcal)		1.2 이상		-		-	
(38) 이노시톨 (mg/100 kcal)		4.0 이상	40	-	40 ¹⁾	-	40 ¹⁾
(39) 타우린 (mg/100 kcal)		12.0 이하 ¹⁾		12.0 이하 ¹⁾		12.0 이하 ¹⁾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 (1) 원료로 사용되는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은 영아가 섭취하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글루텐은 단백질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원료는 식품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3) 영아용 제품에는 코코아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4) 모든 원료는 깨끗하고 우수한 품질로 영·유아가 섭취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해야 하며,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 (1) 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 (2) 열에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류나 용해가 잘 되지 않는 무기질류를 살균 전에 용액에 첨가할 때는 비타민의 파괴율 및 무기질의 용해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3) 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 (4)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포장·충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무균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항 목	유 형	영아전기용 조제유		영아후기용 조제유		유아기용 조제유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최대 권장 기준
(40) DHA		10 ¹⁾ ~ 40 ¹⁾ (다만, EPA함량은 DHA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¹⁾ ~ 40 ¹⁾ (다만, EPA함량은 DHA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1) 사카린나트륨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2) 타르trato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3) 세균수		n=5, c=2, m=1000, M=10000 (멸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44) 대장균군		n=5, c=1, m=0, M=10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45) 크로노박터		n=5, c=0, m=0(60) g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	
(46) 탈화분 (seached particle)		100 mg당 7.5 mg 이하					
(47) 바실루스 서베우스		n=5, c=0, m=100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48) 살모넬라		n=5, c=0, m=0.25g					
(49)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50) 황색모노상구균		n=5, c=0, m=0.25g					
(51)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켄스		n=5, c=0, m=0.25g					

* 비타민 A₁ µg=3.33 IU, 비타민 D₁ µg=40 IU, 비타민 E₁ mg=1.49 IU, 1 mg α-TE (alpha-tocopherol equivalent)=1 mg α-tocopherol
 주) 액상제품의 성분규격 적용은 분말제품의 성분 규격(5.0%)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성분규격을 환산 적용한다.
 *주1.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첨가가 가능한 선택적 성분으로서 첨가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5. 10 중 10-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조제식육

1) 정의

조제식육류란 함은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질원으로 하여 영아와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기타의 식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또는 조제유 대용의 용도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는 제외한다.

- (5) 모유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6) 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 (단위 : mg/g 조단백질)

구 분	히스티딘	아이소류신	루신	라이신	메티오닌 + 시스테인	페닐알라닌 + 티로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계
아미노산 조성	19	28	66	58	25	63	34	11	35	339

- (7) 직접 응용하는 액상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준으로 하며,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 (8) 액상 제품의 용기로 주사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10) 미생물 또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말형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관련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 (11) 제품 포장 전에 외부 물질이나 금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적 방법, 즉 체, 트랩, 자석, 전기적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영아전기용 조제식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하여 분리대두 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질원으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응의 용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영아후기용 조제식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

(3) 유아기용 조제식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항 목	유 형	영아전기용 조제식		영아후기용 조제식		유아기용 조제식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1) 열량 (kcal/100 mL)		60~70		60~70		60~70	
(2) 수분(%)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3) 조단백질 (g/100 kcal)		1.8(분리대두단백을 단백질원으로 제조한 조제식은 2.25)~3.0		1.8(단란, 분리대두단백을 단백질원으로 제조한 조제식은 2.25)~3.0		1.8 이상	
(4) 조지방 (g/100 kcal)		4.4~6.0		4.4~6.0		3.5 이상	
(5) 리놀레산 (mg/100 kcal)		300 이상	1400	300 이상	1400	300 이상	
(6) α-리놀렌산 (mg/100 kcal)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7)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5:1~15:1		5:1~15:1		-	

항 목	유 형	영아전기용 조제식		영아후기용 조제식		유아기용 조제식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8) 탄수화물 (g/100 kcal)		90~140		90~140		125 이하	
(9) 비타민 A (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60~180 또는 200~600		75~180 또는 250~600		75~180 또는 250~600	
(10) 비타민 D (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1.0~2.5 또는 40~100		1.0~2.5 또는 40~100		1.5~4.5 또는 60~180	
(11) 비타민 C (mg/100 kcal)		10.0 이상	30 (단, 액상 제품은 70)	10.0 이상	30 (단, 액상 제품은 70)	10.0 이상	
(12) 비타민 B ₁ (μg/100 kcal)		60 이상	300	60 이상	300	40 이상	
(13) 비타민 B ₂ (μg/100 kcal)		80 이상	500	80 이상	500	80 이상	
(14) 나이아신 (μg/100 kcal)		300 이상	1500	300 이상	1500	400 이상	
(15) 비타민 B ₆ (μg/100 kcal)		35 이상	175	35 이상	175	45 이상 (단란,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초과 단백질 1 g 당 최소한 비타민 B ₆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16) 엽산 (μg/100 kcal)		10.0 이상	50	10.0 이상	50	10.0 이상	
(17) 판토텐산 (μg/100 kcal)		400 이상	2000	400 이상	2000	300 이상	
(18) 비타민 B ₁₂ (μg/100 kcal)		0.1 이상	1.5	0.1 이상	1.5	0.15 이상	
(19) 비타민 K ₁ (μg/100 kcal)		4.0 이상	27	4.0 이상	27	4.0 이상	
(20) 비오틴 (μg/100 kcal)		1.5 이상	10	1.5 이상	10	1.5 이상	
(21) 콜린 (mg/100 kcal)		7.0 이상	50	-	50 ^g	-	50 ^g
(22) 비타민 E (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		0.5 이상 또는 0.7 이상	5.0 또는 7.0	0.5 이상 또는 0.7 이상	5.0 또는 7.0	0.5 이상 또는 0.7 이상 (단란, 리놀레산 1 g 이상인 경우 리놀레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23) 나트륨 (mg/100 kcal)		20~60		20~60		20~85	
(24) 칼륨 (mg/100 kcal)		60~180		60~180		80 이상	
(25) 염소 (mg/100 kcal)		50~160		50~160		55 이상	
(26) 칼슘 (mg/100 kcal)		50 이상	140	50 이상	180	90 이상	

항 목	유 형	영아전기용 조제식		영아후기용 조제식		유아기용 조제식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27) 인 (mg/100 kcal)		25 이상	100	25 이상	100	60 이상 (단란,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28) 마그네슘 (mg/100 kcal)		5.0 이상	15	5.0 이상	15	6.0 이상 (단란,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29) 철 (mg/100 kcal)		0.45 이상 (철분강화제품의 경우 1.0 이상)		1.0~2.0		1.0~3.0	
(30) 요오드 (μg/100 kcal)		10.0 이상	60	10.0 이상	60	5.0 이상	
(31) 구리 (μg/100 kcal)		35 이상	120	35 이상	120	-	
(32) 아연 (mg/100 kcal)		0.5 이상	1.5	0.5 이상	1.5	0.5 이상	1.5
(33) 망간 (μg/100 kcal)		1.0 이상	100	1.0 이상	100	5.0 이상	
(34) 셀레늄 (μg/100 kcal)		1.0~9.0		1.0~9.0		9.0 이하	
(35) 불소 (μg/100 kcal)		100 이하		-		-	
(36) 카르니틴 (mg/100 kcal)		1.2 이상		-		-	
(37) 이노시톨 (mg/100 kcal)		4.0 이상	40	-	40 ¹	-	40 ¹
(38) 타우린 (mg/100 kcal)		120 이하 ¹		120 이하 ¹		120 이하 ¹	
(39) DHA (mg/100 kcal)		10 ¹ ~ 40 ¹ (단란, EPA함량은 DHA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¹ ~ 40 ¹ (단란, EPA함량은 DHA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0) 사카린나트륨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1)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2) 세균수		n=5, c=2, m=1,000, M=10,000 (별관제품은 n=5, c=0, m=0, 단란,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43) 대장균군		n=5, c=0, m=0(별관제품은 제외한다)					
(44) 크로노박터		n=5, c=0, m=0(60 g (별관제품은 제외한다))					
(45) 마실투스 세레우스		n=5, c=0, m=100(별관제품은 제외한다)					
(46) 원화물 (scorched particle)		100 g당 7.5 mg [미국농업연구소(American Dairy Product Institute,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인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단란, 분말제품에 한한다)					

* 비타민 A₁ μg=3.33 IU, 비타민 D₁ μg=40 IU, 비타민 E₁ mg=1.49 IU, 1 mg α-TE (alpha-tocopherol equivalent)=1 mg d-α-tocopherol

주) 액상제품의 성분규격 적용은 분말제품의 성분 규격(5.0%)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성분규격을 환산 적용한다.

*주1.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첨가가 가능한 선택적 성분으로서 첨가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제5. 10. 중 10-3을 삭제하고, 10-4부터 10-7까지를 각각 10-3부터 10-6까지로 한다.

제5. 11. 11-2 4) (2)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을 “조제식류”로 한다.

제8. 1. 1.2 1.2.2 다 히) 중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를 “조제유류”로 한다.

제8. 2.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을 “조제식류”로 한다.

제8. 9.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을 “조제식류”로 한다.

별표 4 (418) 피레트린(Pyrethrins) 중 “포도 1.0[†]”을 “포도 0.4[†]”로 한다.

별표 4 (433) 피카부트라록스(Picabutradox) 중 “호박 0.3”을 “호박 0.15”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 3. 중 조제유류 및 조제식료류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변경 사항
 2. 제5. 10.
 3. 제5. 11. 중 조제유류 및 조제식료류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변경 사항
 4. 제8. 중 조제유류 및 조제식료류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변경 사항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 이 고시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각각 이 고시의 “영아전기용 조제유 및 영아후기용 조제유”, “영아후기용 조제유 및 유아기용 조제유”, “영아전기용 조제식 및 영아후기용 조제식”, “영아후기용 조제식 및 유아기용 조제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1. (생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5) 오염물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2) 중금속 기준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공식품				④ 가공식품			
대상식품	납 (mg/kg)	비소 (mg/kg)	무기비소 (mg/kg)	대상식품	납 (mg/kg)	비소 (mg/kg)	무기비소 (mg/kg)
① ~ ② (생략)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생략)			③ 조제유류,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3) 곰팡이독소 기준				(3) 곰팡이독소 기준			
① 총 아플라톡신(B ₁ , B ₂ , G ₁ 및 G ₂ 의 합)				① 총 아플라톡신(B ₁ , B ₂ , G ₁ 및 G ₂ 의 합)			
대상식품	기준(μg/kg)			대상식품	기준(μg/kg)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가공식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제외)	(생략)			가공식품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제외)	(생략)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생략)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아플라톡신 M ₁		② 아플라톡신 M ₁	
대상식품	기준(μg/kg)	대상식품	기준(μg/kg)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생략)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③ 파툴린(Patulin)		③ 파툴린(Patulin)	
대상식품	기준(μg/kg)	대상식품	기준(μg/kg)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생략)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⑤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대상식품	기준(μg/kg)	대상식품	기준(μg/kg)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생략)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현행과 같음)
⑥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⑥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대상식품	기준(mg/kg)	대상식품	기준(mg/kg)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생략)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⑦ 제랄레논(Zearalenone)		⑦ 제랄레논(Zearalenone)			
대상식품	기준(μg/kg)	대상식품	기준(μg/kg)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생략)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벤조피렌[Benzo(a)pyrene]		(6) 벤조피렌[Benzo(a)pyrene]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1.0 μg/kg 이하		⑧ 조제유류,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1.0 μg/kg 이하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멜라민(Melamine) 기준		(8) 멜라민(Melamine) 기준			
대상식품	기준	대상식품	기준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생략)	○ 조제유류, 조제식료,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방사능 기준		(10) 방사능 기준			
핵종	대상식품	기준(Bq/kg, L)	핵종	대상식품	기준(Bq/kg, L)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4}C S + ^{13}C 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 영아용 조제용, 성장기용 조제용,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기타 식품*	50 이하	^{14}C S + ^{13}C S 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 조제용,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기타 식품*	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 영아용 조제용, 성장기용 조제용,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 기타식품은 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 조제용,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6) ~ 16) (생략)		6) ~ 16)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 ~ 제4. (생략)		제3. ~ 제4. (현행과 같음)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특수영양식품		10. 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신·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신·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10-1 조제유류		10-1 조제유류	
1) 정의		1) 정의	
조제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		조제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	

현행		개정(안)	
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품을 주원료로 하여 영아와 유아의 성장 발육에 적합하도록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대용의 용도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모든 원료는 깨끗하고 우수한 품질로 영·유아가 섭취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해야 하며,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3) 제조·가공기준	
<신 설>		(1) 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1) (생략)		(2) (현행과 같음)	
(2) 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영양성분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3) 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3) ~ (4)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직접 응용하는 액상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준으로 하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현행	개정(안)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7) 액상 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미생물 또는 다른 오염원의 예방하기 위하여 분말형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관련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9) 제품 포장 전에 외부 물질이나 금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적 방법, 즉, 체, 트랩, 자석, 진기적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4) 식품유형
(1) 영아용 조제유	(1) 영아전기용 조제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하여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2) 영아후기용 조제유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성장기용 조제유	(3) 유아기용 조제유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5) 규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rowspan="2">유형</th> <th colspan="2">영아용 조제유</th> <th colspan="2">성장기용 조제유</th> </tr> <tr>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열량</td> <td></td> <td>60~70</td> <td>60~85</td> <td></td> <td></td> </tr> <tr> <td>(2) 수분(%)</td> <td></td> <td>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td> <td>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td> <td></td> <td></td> </tr> <tr> <td>(3) 조단백질</td> <td></td> <td>1.8~3.0</td> <td>2.4~5.5</td> <td></td> <td></td> </tr> <tr> <td>(4) 조지방</td> <td></td> <td>4.4~6.0</td> <td>3.0~6.0</td> <td></td> <td></td> </tr> <tr> <td>(5) 리놀레산</td> <td></td> <td>300 이상</td> <td>1400</td> <td>300 이상</td> <td></td> </tr> <tr> <td>(6) α-리놀레산</td> <td></td> <td>50 이상</td> <td>-</td> <td></td> <td></td> </tr> <tr> <td>(7) 리놀레산과 α-리놀레산의 비율</td> <td></td> <td>5:1~15:1</td> <td>-</td> <td></td> <td></td> </tr> <tr> <td>(8) 탄수화물</td> <td></td> <td>9.0~14.0</td> <td>-</td> <td></td> <td></td> </tr> <tr> <td>(9) 유성분</td> <td></td> <td>12.0 이상</td> <td>12.0 이상</td> <td></td> <td></td> </tr> <tr> <td>(10) 비타민 A</td> <td></td> <td>60~180 또는 200~600 (IU/100 kcal)</td> <td>75~225 또는 250~750</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1) 열량		60~70	60~85			(2) 수분(%)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3) 조단백질		1.8~3.0	2.4~5.5			(4) 조지방		4.4~6.0	3.0~6.0			(5) 리놀레산		300 이상	1400	300 이상		(6) α-리놀레산		50 이상	-			(7) 리놀레산과 α-리놀레산의 비율		5:1~15:1	-			(8) 탄수화물		9.0~14.0	-			(9) 유성분		12.0 이상	12.0 이상			(10) 비타민 A		60~180 또는 200~600 (IU/100 kcal)	75~225 또는 250~75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rowspan="2">유형</th> <th colspan="2">영아전기용 조제유</th> <th colspan="2">영아후기용 조제유</th> <th colspan="2">유아기용 조제유</th> </tr> <tr>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h>최대권장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열량</td> <td></td> <td>60~70</td> <td>60~70</td> <td>60~70</td> <td></td> <td></td> <td></td> </tr> <tr> <td>(2) 수분(%)</td> <td></td> <td>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td> <td>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td> <td>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td> <td>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td> <td>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td> <td></td> </tr> <tr> <td>(3) 조단백질</td> <td></td> <td>1.8~3.0</td> <td>1.8~3.0</td> <td>1.8 이상</td> <td></td> <td></td> <td></td> </tr> <tr> <td>(4) 조지방</td> <td></td> <td>4.4~6.0</td> <td>4.4~6.0</td> <td>3.5 이상</td> <td></td> <td></td> <td></td> </tr> <tr> <td>(5) 리놀레산</td> <td></td> <td>300 이상</td> <td>1400</td> <td>300 이상</td> <td>1400</td> <td>300 이상</td> <td></td> </tr> <tr> <td>(6) α-리놀레산</td> <td></td> <td>50 이상</td> <td>50 이상</td> <td>50 이상</td> <td></td> <td></td> <td></td> </tr> <tr> <td>(7) 리놀레산과 α-리놀레산의 비율</td> <td></td> <td>5:1~15:1</td> <td>5:1~15: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 탄수화물</td> <td></td> <td>9.0~14.0</td> <td>9.0~14.0</td> <td>12.5 이하</td> <td></td> <td></td> <td></td> </tr> <tr> <td>(9) 유성분</td> <td></td> <td>12.0 이상</td> <td>12.0 이상</td> <td>12.0 이상</td> <td></td> <td></td> <td></td> </tr> <tr> <td>(10) 비타민 A</td> <td></td> <td>60~180 또는 200~600 (IU/100 kcal)</td> <td>75~180 또는 250~600</td> <td>75~180 또는 250~6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유형	영아전기용 조제유		영아후기용 조제유		유아기용 조제유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1) 열량		60~70	60~70	60~70				(2) 수분(%)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3) 조단백질		1.8~3.0	1.8~3.0	1.8 이상				(4) 조지방		4.4~6.0	4.4~6.0	3.5 이상				(5) 리놀레산		300 이상	1400	300 이상	1400	300 이상		(6) α-리놀레산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7) 리놀레산과 α-리놀레산의 비율		5:1~15:1	5:1~15:1	-				(8) 탄수화물		9.0~14.0	9.0~14.0	12.5 이하				(9) 유성분		12.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10) 비타민 A		60~180 또는 200~600 (IU/100 kcal)	75~180 또는 250~600	75~180 또는 250~600			
항목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1) 열량		60~70	60~85																																																																																																																																																																		
(2) 수분(%)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3) 조단백질		1.8~3.0	2.4~5.5																																																																																																																																																																		
(4) 조지방		4.4~6.0	3.0~6.0																																																																																																																																																																		
(5) 리놀레산		300 이상	1400	300 이상																																																																																																																																																																	
(6) α-리놀레산		50 이상	-																																																																																																																																																																		
(7) 리놀레산과 α-리놀레산의 비율		5:1~15:1	-																																																																																																																																																																		
(8) 탄수화물		9.0~14.0	-																																																																																																																																																																		
(9) 유성분		12.0 이상	12.0 이상																																																																																																																																																																		
(10) 비타민 A		60~180 또는 200~600 (IU/100 kcal)	75~225 또는 250~750																																																																																																																																																																		
항목	유형	영아전기용 조제유		영아후기용 조제유		유아기용 조제유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최대권장 기준																																																																																																																																																														
(1) 열량		60~70	60~70	60~70																																																																																																																																																																	
(2) 수분(%)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3) 조단백질		1.8~3.0	1.8~3.0	1.8 이상																																																																																																																																																																	
(4) 조지방		4.4~6.0	4.4~6.0	3.5 이상																																																																																																																																																																	
(5) 리놀레산		300 이상	1400	300 이상	1400	300 이상																																																																																																																																																															
(6) α-리놀레산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7) 리놀레산과 α-리놀레산의 비율		5:1~15:1	5:1~15:1	-																																																																																																																																																																	
(8) 탄수화물		9.0~14.0	9.0~14.0	12.5 이하																																																																																																																																																																	
(9) 유성분		12.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10) 비타민 A		60~180 또는 200~600 (IU/100 kcal)	75~180 또는 250~600	75~180 또는 250~600																																																																																																																																																																	

현행			개정(안)		
항목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유아용 조제유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11) 비타민 D ($\mu\text{g}/100 \text{ kcal}$ 또는 IU/100 kcal)		1.0-2.5 또는 40-100	1.0-2.5 또는 40-100	1.0-2.5 또는 40-100	1.5-4.5 또는 60-180
(12) 비타민 C ($\text{mg}/100 \text{ kcal}$)	10.0 이상	30 (단, 액상 제품은 20)	10.0 이상	30 (단, 액상 제품은 20)	10.0 이상
(13) 비타민 B ₁ ($\mu\text{g}/100 \text{ kcal}$)	60 이상	300	60 이상	300	40 이상
(14) 비타민 B ₂ ($\mu\text{g}/100 \text{ kcal}$)	80 이상	500	80 이상	500	80 이상
(15) 나이아신 ($\mu\text{g}/100 \text{ kcal}$)	300 이상	1500	300 이상	1500	400 이상
(16) 비타민 B ₆ ($\mu\text{g}/100 \text{ kcal}$)	35 이상	175	35 이상 (단, 단백질 2.3g 이상인 경우 조제유는 1.0g 당 최소한 15 μg 의 비율이어야 한다)	35 이상 (단, 단백질 2.3g 이상인 경우 조제유는 1.0g 당 최소한 15 μg 의 비율이어야 한다)	45 이상 (단, 단백질 3.0g 이상인 경우 조제유는 1.0g 당 최소한 15 μg 의 비율이어야 한다)
(17) 엷산 ($\mu\text{g}/100 \text{ kcal}$)	10.0 이상	50	10.0 이상	50	10.0 이상
(18) 판토텐산 ($\mu\text{g}/100 \text{ kcal}$)	400 이상	2000	400 이상	2000	300 이상
(19) 비타민 B ₁₂ ($\mu\text{g}/100 \text{ kcal}$)	0.1 이상	1.5	0.1 이상	1.5	0.15 이상
(20) 비타민 K ₁ ($\mu\text{g}/100 \text{ kcal}$)	4.0 이상	27	4.0 이상	27	4.0 이상
(21) 비오틴 ($\mu\text{g}/100 \text{ kcal}$)	1.5 이상	10	1.5 이상	10	1.5 이상
(22) 비타민 E ($\text{mg a-TE}/100 \text{ kcal}$ 또는 IU/100 kcal)	0.5 이상 또는 0.7 이상	5.0 또는 7.0	0.5 이상 또는 0.7 이상 (단, 리놀렌산 1.0g 이상인 경우 리놀렌산 1.0g 당 최소한 0.5 mg a-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0.5 이상 또는 0.7 이상 (단, 리놀렌산 1.0g 이상인 경우 리놀렌산 1.0g 당 최소한 0.5 mg a-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0.5 이상 또는 0.7 이상 (단, 리놀렌산 1.0g 이상인 경우 리놀렌산 1.0g 당 최소한 0.5 mg a-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23) 나트륨 ($\text{mg}/100 \text{ kcal}$)		20-60	20-60	20-60	20-85

현행			개정(안)		
항목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유아용 조제유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24) 칼슘 ($\text{mg}/100 \text{ kcal}$)		60-180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25) 인 ($\text{mg}/100 \text{ kcal}$)		50-160	55 이상	55 이상	55 이상
(26) 칼륨 ($\text{mg}/100 \text{ kcal}$)	50 이상	140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27) 인 ($\text{mg}/100 \text{ kcal}$)	25 이상	100	60 이상 (단,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60 이상 (단,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60 이상 (단,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28) 마그네슘 ($\text{mg}/100 \text{ kcal}$)	5.0 이상	15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29) 철 ($\text{mg}/100 \text{ kcal}$)	0.15 이상 (최소강화제품의 경우 1.0 이상)	1.0-2.0	0.45 이상 (최소강화제품의 경우 1.0 이상)	1.0-2.0	1.0-3.0
(30) 요오드 ($\mu\text{g}/100 \text{ kcal}$)	10.0 이상	60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31) 구리 ($\mu\text{g}/100 \text{ kcal}$)	35 이상	120	-	-	-
(32) 아연 ($\mu\text{g}/100 \text{ kcal}$)	0.5 이상	15	0.5 이상	0.5 이상	0.5 이상
(33) 망간 ($\mu\text{g}/100 \text{ kcal}$)	1.0 이상	100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34) 셀레늄 ($\mu\text{g}/100 \text{ kcal}$)		1.0-9.0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신 설>	<신 설>	-	-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5) 사카린나트륨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6)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7) 계류수		n=5, c=2, m=1000, M=10000 (평균제품은 n=5, c=0, m=0, 단,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1000, M=10000 (평균제품은 n=5, c=0, m=0, 단,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항목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유아용 조제유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38) 대장균		n=5, c=0, m=0, M=10 (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39) 크로노박터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	-	-
(40) 탄화물 (scorched particle)		100 μg 7.5 mg 이하	100 μg 7.5 mg 이하	100 μg 7.5 mg 이하	100 μg 7.5 mg 이하
(41) 박테리우스 세레우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42) 살모넬라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43)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44)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45) 클로스트리디움 페르FRINGENS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 비타민 A, $\mu\text{g}=3.33 \text{ IU}$, 비타민 D, $\mu\text{g}=40 \text{ IU}$, 비타민 E, $\text{mg d-}\alpha\text{-tocopherol}=1.49 \text{ IU}$, 1 mg a-TE (alpha-tocopherol equivalent)=1 mg d-}\alpha\text{-tocopherol

주: 영양성분의 성분명 및 내용은 분말제품의 수분 규격(5.0%)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성분규격을 환산 적용한다.

*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 가능한 전염적 성분으로서 첨가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6) (생략)

10-2 영양용 조제식

1) 정의

영아용 조제식이라 함은 분리대두 단백질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질원으로 하여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기타의 식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또는 조제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

현행			개정(안)		
항목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유아용 조제유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최대권장기준	
(46) 대장균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47) 크로노박터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	-	-
(48) 탄화물 (scorched particle)		100 μg 7.5 mg 이하	100 μg 7.5 mg 이하	100 μg 7.5 mg 이하	100 μg 7.5 mg 이하
(49) 박테리우스 세레우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50) 살모넬라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5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52)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53) 클로스트리디움 페르FRINGENS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n=5, c=0, m=0.25g

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는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조건

(1) ~ (2) (생략)

(3) 코코아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저수분 상태로 미리 건조하고 보관하며, 그 외 원료들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관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생략)

<신 설>

(2) ~ (5) (생략)

현행	개정(안)
(6) 액상, 페이스트상 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 (9) (생략) 4) 식품유형 <u><신설></u>	(8) 액상 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 (11)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1) 영아전이용 조제식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하여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응의 용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영아후기용 조제식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 (3) 유아기용 조제식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
5) 가격 (1) 수분(%) :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 열량(kcal/100 ml) : 60~70 (3) 조단백질(g/100 kcal) : 1.8~4.0 (4) 조지방(g/100 kcal) : 4.4~6.0	5) 가격 (1) 수분(%) :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 열량(kcal/100 ml) : 60~70 (3) 조단백질(g/100 kcal) : 1.8~4.0 (4) 조지방(g/100 kcal) : 4.4~6.0

현행	개정(안)
(5) 리놀렌산(mg/100 kcal) : 300 이상 (6) α-리놀렌산(mg/100 kcal) : 50 이상 (7) 리놀렌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 5:1~15:1 (8) 탄수화물(g/100 kcal) : 9.0~14.0 (9) 비타민 A(μgRE/100 kcal 또는 IU/100 kcal) : 75~150 또는 250~500 (10) 비타민 D(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 1.0~2.5 또는 40~100 (11) 비타민 C(mg/100 kcal) : 8 이상 (12) 비타민 B ₁ (μg/100 kcal) : 40 이상 (13) 비타민 B ₂ (μg/100 kcal) : 60 이상 (14) 나이아신(μg/100 kcal) : 250 이상 (15) 비타민 B ₆ (μg/100 kcal) : 35 이상(다만,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조단백질 1 g당 비타민 B ₆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16) 엽산(μg/100 kcal) : 4.0 이상 (17) 판토텐산(μg/100 kcal) : 300 이상 (18) 비타민 B ₁₂ (μg/100 kcal) : 0.1 이상 (19) 비타민 K ₁ (μg/100 kcal) : 4.0 이상 (20) 비오틴(μg/100 kcal) : 1.5 이상	영아전이용 조제식 최대권장 기준 영아후기용 조제식 최대권장 기준 유아기용 조제식 최대권장 기준 (3) 조단백질(mg/100 kcal) : 1.8(분리대두단백을 단백질원으로 제조한 조제식은 2.5)~3.0 (4) 조지방(g/100 kcal) : 4.4~6.0 (5) 리놀렌산(mg/100 kcal) : 300 이상 (6) α-리놀렌산(mg/100 kcal) : 50 이상 (7) 리놀렌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 5:1~15:1 (8) 탄수화물(g/100 kcal) : 9.0~14.0 (9) 비타민 A(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 75~180 또는 250~600 (10) 비타민 D(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 1.0~2.5 또는 40~100 (11) 비타민 C(mg/100 kcal) : 100 이상 (12) 비타민 B ₁ (μg/100 kcal) : 60 이상 (13) 비타민 B ₂ (μg/100 kcal) : 80 이상 (14) 나이아신(μg/100 kcal) : 300 이상 (15) 비타민 B ₆ (μg/100 kcal) : 35 이상 (16) 엽산(μg/100 kcal) : 4.0 이상 (17) 판토텐산(μg/100 kcal) : 300 이상 (18) 비타민 B ₁₂ (μg/100 kcal) : 0.1 이상 (19) 비타민 K ₁ (μg/100 kcal) : 4.0 이상 (20) 비오틴(μg/100 kcal) : 1.5 이상

현행	개정(안)
(21) 콜린(mg/100 kcal) : 7.0 이상 (22) 비타민 E(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 : 0.5 이상 또는 0.7 이상(다만, 비타민 E는 리놀렌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23) 나트륨(mg/100 kcal) : 20~60 (24) 칼륨(mg/100 kcal) : 80~200 (25) 엽소(mg/100 kcal) : 55~150 (26) 칼슘(mg/100 kcal) : 50 이상 (27) 인(mg/100 kcal) : 25 이상(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1~2:1 이어야 한다.) (28) 마그네슘(mg/100 kcal) : 6.0 이상 (29) 철(mg/100 kcal) : 1.0 이상 (30) 요오드(μg/100 kcal) : 5.0 이상 (31) 구리(μg/100 kcal) : 60 이상 (32) 아연(mg/100 kcal) : 0.75 이상 (33) 망간(μg/100 kcal) : 5.0 이상 (34) 셀레늄(μg/100 kcal) : 9.0 이하 (35)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6)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콜린(mg/100 kcal) : 7.0 이상 (22) 비타민 E(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 : 0.5 이상 또는 0.7 이상(다만, 리놀렌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23) 나트륨(mg/100 kcal) : 20~60 (24) 칼륨(mg/100 kcal) : 80~200 (25) 엽소(mg/100 kcal) : 55~150 (26) 칼슘(mg/100 kcal) : 50 이상 (27) 인(mg/100 kcal) : 25 이상(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1~2:1 이어야 한다.) (28) 마그네슘(mg/100 kcal) : 6.0 이상 (29) 철(mg/100 kcal) : 1.0 이상 (30) 요오드(μg/100 kcal) : 5.0 이상 (31) 구리(μg/100 kcal) : 60 이상 (32) 아연(mg/100 kcal) : 0.75 이상 (33) 망간(μg/100 kcal) : 5.0 이상 (34) 셀레늄(μg/100 kcal) : 9.0 이하 (35)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6)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37) 세균수 : n=5, c=2, m=1,000, M=10,000(평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38) 대장균군 : n=5, c=0, m=0(별 균제품은 제외한다) (39) 크로노박터 : n=5, c=0, m=0/60g(평균제품은 제외한다) (40) 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별균제품은 제외한다) (41) 탄화물 : 100 g당 7.5 mg [미국농연구소(American Dairy Product Institute,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37) 세균수 : n=5, c=2, m=1,000, M=10,000(평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38) 대장균군 : n=5, c=0, m=0(별 균제품은 제외한다) (39) 크로노박터 : n=5, c=0, m=0/60g(평균제품은 제외한다) (40) 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별균제품은 제외한다) (41) 탄화물 : 100 g당 7.5 mg [미국농연구소(American Dairy Product Institute,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 비타민 A, mg=3.33 IU, 비타민 D, mg=40 IU, 비타민 E, mg=1.49 IU, 1 mg α-TE (alpha-tocopherol equivalent)=1 mg α-tocopherol
 ※ 액상제품의 성분규격 적용은 분말제품의 수분 규격(5%)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성분규격을 환산 적용한다.
 ※ 주1,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첨가가 가능한 천연성 성분으로서 첨가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열량

6) 시험방법

<삭제>

현 행	개 정(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6 열량의 계산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4) 조지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1 조지방에 따라 시험한다.	
(5) 리놀레산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6) α-리놀렌산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7)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8) 탄수화물	
제8. 일반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에 따라 한다.	
(9) 비타민 A	

현 행	개 정(안)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 비타민 A에 따라 시험한다.	
(10) 비타민 D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7 비타민 D에 따라 시험한다.	
(11) 비타민 C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4 비타민 C에 따라 시험한다.	
(12) 비타민 B ₁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2 비타민 B ₁ 에 따라 시험한다.	
(13) 비타민 B ₂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3 비타민 B ₂ 에 따라 시험한다.	
(14) 나이아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5 나이아신에 따라 시험한다.	
(15) 비타민 B ₆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현 행	개 정(안)
성분시험법 2.2.2.9 비타민 B ₆ (피리독신) 또는 2.2.2.12.2 비타민 B ₆ 에 따라 시험한다.	
(16) 엽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3 엽산에 따라 시험한다.	
(17) 판토텐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0 판토텐산 또는 2.2.2.12.4 판토텐산에 따라 시험한다.	
(18) 비타민 B ₁₂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1 비타민 B ₁₂ 또는 2.2.2.12.5 비타민 B ₁₂ 에 따라 시험한다.	
(19) 비타민 K ₁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8 비타민 K ₁ 에 따라 시험한다.	
(20) 비오틴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7 비오틴에 따라 시험한다.	

현 행	개 정(안)
(21) 콜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6 콜린에 따라 시험한다.	
(22) 비타민 E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6 비타민 E에 따라 시험한다.	
(23) 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6 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24) 칼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7 칼륨에 따라 시험한다.	
(25) 엽소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성분 2.2.1.14 엽소에 따라 시험한다.	
(26) 칼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2 칼슘에 따라 시험한다.	
(27) 인	

현행	개정(안)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3 인에 따라 시험한다.	
(28) 마그네슘	
제8. 일반시험법 2.2.1.15 마그네슘에 따라 시험한다.	
(29) 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4 철에 따라 시험한다.	
(30) 요오드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9 요오드에 따라 시험한다.	
(31) 구리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나. 시험용액의 조제 2) 건식회화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9.1.2 다. 측정 1)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현행	개정(안)
ICP-OES) 또는 3)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AS)에 따라 시험한다.	
(32) 아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8 아연에 따라 시험한다.	
(33) 망간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나. 시험용액의 조제 2) 건식회화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9.1.2 다. 측정 1)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또는 3)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AS)에 따라 시험한다.	
(34) 셀레늄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현행	개정(안)
성분시험법 2.2.1.10. 셀레늄에 따라 시험한다.	
(35)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36)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7)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38)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39) 크로노박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1 크로노박터에 따라 시험한다.	
(40)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현행	개정(안)
(41) 탄화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법 1.2.2. 식품별 이물 다. 시험조작 바) 아이스크림분말, 무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및 조제분유, 조제식에 따라 시험한다.	
<신 설>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0-3 성장기용 조제식	<삭 제: 10-2로 통합>
1) 정의	
성장기용 조제식이라 함은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함유식품을 원료로 생후 6개월 부터의 영아,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이유식의 섭취시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는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식품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저수분 상태로 미리	

현행	개정(안)
<p>건조하고 보관하며, 그 외 원료들도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관한다.</p> <p>3) 제조·가공기준</p> <p>(1) 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p> <p>(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포장·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무균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p> <p>(3) 모유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p> <p>(4) 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85 이상이어야 한다.</p> <p>*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위한</p>	

현행	개정(안)
<p>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는 10-2 3) (4)의 것을 따른다.</p> <p>(5) 직접 응용하는 액상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준으로 하며,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p> <p>(6) 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7)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p> <p>(8)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1.5% 이하이어야 한다.</p> <p>(9) 미생물 또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말형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관련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p> <p>(10) 제품 포장 전에 외부 물질이나 금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적</p>	

현행	개정(안)
<p>방법, 즉 체, 트랩, 자석, 전기적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p> <p>4) 식품유형</p> <p>5) 규격</p> <p>(1) 수분(%) :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p> <p>(2) 열량(kcal/100 ml) : 60~85</p> <p>(3) 조단백질(g/100kcal) : 3.0~5.5</p> <p>(4) 조지방(g/100kcal) : 3.0~6.0</p> <p>(5) 리놀레산(mg/100kcal) : 300 이상</p> <p>(6) 비타민 A(μgRE/100 kcal 또는 IU/100 kcal) : 75~225 또는 250~750</p> <p>(7) 비타민 D(μgRE/100 kcal 또는 IU/100 kcal) : 1.0~3.0 또는 40~120</p> <p>(8) 비타민 C(mg/100kcal) : 8 이상</p> <p>(9) 비타민 B₁(μg/100kcal) : 40 이상</p> <p>(10) 비타민 B₂(μg/100kcal) : 60 이상</p>	

현행	개정(안)
<p>(11) 나이아신(μg/100kcal) : 250 이상</p> <p>(12) 비타민 B₆(μg/100kcal) : 45 이상(다만, 단백질 3.0 g 이상인 경우 초과단백질 1 g당 비타민 B₆ 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p> <p>(13) 엽산(μg/100kcal) : 4.0 이상</p> <p>(14) 판토텐산(μg/100kcal) : 300 이상</p> <p>(15) 비타민 B₁₂(μg/100kcal) : 0.15 이상</p> <p>(16) 비타민 K₁(μg/100kcal) : 4.0 이상</p> <p>(17) 비오틴(μg/100kcal) : 1.5 이상</p> <p>(18) 비타민 E(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 : 0.5 이상 또는 0.7 이상(다만, 비타민 E는 리놀레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p> <p>(19) 나트륨(mg/100kcal) : 20~85</p> <p>(20) 칼륨(mg/100kcal) : 80 이상</p> <p>(21) 염소(mg/100kcal) : 55 이상</p> <p>(22) 칼슘(mg/100kcal) : 90 이상</p> <p>(23) 인(mg/100kcal) : 60 이상(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1~2:1</p>	

현 행	개 정(안)
이어야 한다.) (24) 마그네슘(mg/100kcal) : 6.0 이상 (25) 철(mg/100kcal) : 1.0 이상 (26) 요오드(μ g/100kcal) : 5.0 이상 (27) 아연(mg/100kcal) : 0.5 이상 (28) 셀레늄(μ g/100 kcal) : 9.0 이하 (29)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0)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1) 세균수 : n=5, c=2, m=1,000, M=10,000(평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32) 대장균군 : n=5, c=0, m=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33) 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평균제품은 제외한다) (34) 탄화물 : 100 g 당 7.5 mg[미국농연구소(American Dairy Products Institute,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	

현 행	개 정(안)
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열량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6 열량의 계산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4) 조지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1 조지방에 따라 시험한다. (5) 리놀레산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6) 비타민 A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 비타민 A에 따라 시험한다. (7) 비타민 D	

현 행	개 정(안)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7 비타민 D에 따라 시험한다. (8) 비타민 C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4 비타민 C에 따라 시험한다. (9) 비타민 B ₁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2 비타민 B ₁ 에 따라 시험한다. (10) 비타민 B ₂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3 비타민 B ₂ 에 따라 시험한다. (11) 나이아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5 나이아신에 따라 시험한다. (12) 비타민 B ₆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9 비타민 B ₆ (피리독신) 또는 2.2.2.12.2 비타민 B ₆ 에 따라 시험한다. (13) 엽산	

현 행	개 정(안)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3 엽산에 따라 시험한다. (14) 판토텐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0 판토텐산 또는 2.2.2.12.4 판토텐산에 따라 시험한다. (15) 비타민 B ₁₂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1 비타민 B ₁₂ 또는 2.2.2.12.5 비타민 B ₁₂ 에 따라 시험한다. (16) 비타민 K ₁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8 비타민 K ₁ 에 따라 시험한다. (17) 비오틴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7 비오틴에 따라 시험한다. (18) 비타민 E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6 비타민 E에 따라 시험한다.	

현 행	개 정(안)
(19) 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1.2.1.6 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20) 칼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1.2.1.7 칼륨에 따라 시험한다.	
(21) 염소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 무기성분 2.2.1.14 염소에 따라 시험한다.	
(22) 칼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2 칼슘에 따라 시험한다.	
(23) 인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3 인에 따라 시험한다.	
(24) 마그네슘 제8. 일반시험법 2.2.1.15 마그네슘에 따라 시험한다.	
(25) 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현 행	개 정(안)
성분시험법 2.2.1.4 철에 따라 시험한다.	
(26) 요오드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9 요오드에 따라 시험한다.	
(27) 아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8 아연에 따라 시험한다.	
(28) 셀레늄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1.10. 셀레늄에 따라 시험한다.	
(29)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30)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32) 대장균군	

현 행	개 정(안)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33)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34) 탄화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법 1.2.2. 식품별 이물 다. 시험조작 바) 아이스크림분말, 무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및 조제분유, 조제식에 따라 시험한다.	
10-4 ~ 10-7 (생 략)	10-3 ~ 10-6 (현행과 같음)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생 략)	11-1 (현행과 같음)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4) 식품유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

현 행	개 정(안)
른 영·유아 또는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조제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른 영·유아 또는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조제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조제 식류,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11-3 (생 략)	11-3 (현행과 같음)
12. ~ 24. (생 략)	12. ~ 24. (현행과 같음)
제6. ~ 제7. (생 략)	제6. ~ 제7. (현행과 같음)
제8. 일반시험법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1 ~ 1.2.1 (생 략)	1.1 ~ 1.2.1 (현행과 같음)
1.2.2 식품별 이물	1.2.2 식품별 이물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시험조작	다. 시험조작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허)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중 탄화물	허) 조제유류 중 탄화물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호) (생략)	호) (현행과 같음)
1.3 ~ 1.7 (생략)	1.3 ~ 1.7 (현행과 같음)
2. 식품성분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생략)	2.1 (현행과 같음)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	2.2.1 무기질
2.2.1.1 (생략)	2.2.1.1 (현행과 같음)
2.2.1.2 칼슘	2.2.1.2 칼슘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2.1.3 인	2.2.1.3 인
가. 몰리브덴청 비색법	가. 몰리브덴청 비색법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u> 등 식품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u> 등 식품에 적용한다.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2.1.4 ~ 2.2.1.8 (생략)	2.2.1.4 ~ 2.2.1.8 (현행과 같음)
2.2.1.9 요오드	2.2.1.9 요오드
가. 이온-선택 전극법	가. 이온-선택 전극법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u> 조제유류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 조제유류</u> 에 적용한다.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2.1.10 셀레늄	2.2.1.10 셀레늄
가. 시험법 적용범위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u> 조제유류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 조제유류</u>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적용한다.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2.1.11 ~ 2.2.1.13 (생략)	2.2.1.11 ~ 2.2.1.13 (현행과 같음)
2.2.1.14 염소	2.2.1.14 염소
가. 적정법(제1법)	가. 적정법(제1법)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조제유류, <u>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u> 등에 적용한다.	조제유류, <u>조제식류</u> 등에 적용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이온선택전극법(제2법)	나. 이온선택전극법(제2법)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조제유류, <u>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u> 등에 적용한다.	조제유류, <u>조제식류</u> 등에 적용한다.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제3법)	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제3법)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조제유류, <u>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u> 등에 적용한다.	조제유류, <u>조제식류</u> 등에 적용한다.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2.2.1.15 마그네슘	2.2.1.15 마그네슘

현행	개정(안)
가. 시험법 적용범위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u>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2.2 비타민류	2.2.2 비타민류
2.2.2.1 ~ 2.2.2.4 (생략)	2.2.2.1 ~ 2.2.2.4 (현행과 같음)
2.2.2.5 나이아신	2.2.2.5 나이아신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	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량시험 (생략)	7) 정량시험 (현행과 같음)
가) 계산방법	가) 계산방법
(1) <u>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 조제유류</u> (생략)	(1) <u>조제식류, 조제유류</u>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2.2.6 (생략)	2.2.2.6 (현행과 같음)
2.2.2.7 비타민D	2.2.2.7 비타민D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육방전환 벨브시스템)/자외부검출기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에 의한 정량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육방전환 벨브시스템)/자외부검출기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에 의한 정량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현행	개정(안)
<u>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2.2.2.8 비타민K ₁	2.2.2.8 비타민K ₁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제2법)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량(제2법)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2.2.2.9 (생략)	2.2.2.9 (현행과 같음)
2.2.2.10 판토텐산	2.2.2.10 판토텐산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에 의한 정량	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에 의한 정량
1) 시험법 적용범위	1)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u> 및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다.	<u>조제식류 및 조제유류</u> 등에 적용한다.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2.2.2.11 (생략)	2.2.2.11 (현행과 같음)
2.2.2.12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시험법	2.2.2.12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시험법
2.2.2.12.1 ~ 2.2.2.12.3 (생략)	2.2.2.12.1 ~ 2.2.2.12.3 (현행과 같음)
2.2.2.12.4 판토텐산	2.2.2.12.4 판토텐산

현행	개정(안)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조제유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생략)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조제유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현행과 같음)
2.2.2.12.5 비타민B ₁₂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조제유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생략)	2.2.2.12.5 비타민B ₁₂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조제유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현행과 같음)
2.2.2.12.6 콜린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생략)	2.2.2.12.6 콜린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현행과 같음)
2.2.2.12.7 비오틴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생략)	2.2.2.12.7 비오틴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u> 나. ~ 마. (현행과 같음)
2.2.2.13 엽산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등에 적용한다.</u> 나. ~ 아. (생략)	2.2.2.13 엽산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등에 적용한다.</u> 나. ~ 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2.2.14 콜린 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성 및 정량(제1법) 1)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다.</u> 2) ~ 8) (생략)	2.2.2.14 콜린 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정성 및 정량(제1법) 1)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다.</u> 2) ~ 8) (현행과 같음)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제2법) 1)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다.</u> 2) ~ 8) (생략)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제2법) 1)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다.</u> 2) ~ 8) (생략)
2.2.2.15 비오틴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육방전환 밸브시스템)/자외부검출기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의한 정량 1)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에 적용한다.</u> 2) ~ 8) (생략)	2.2.2.15 비오틴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육방전환 밸브시스템)/자외부검출기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의한 정량 1)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등에 적용한다.</u> 2) ~ 8) (현행과 같음)
2.2.2.16 비타민B군 동시분석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u>	2.2.2.16 비타민B군 동시분석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 <u>조제식류,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u>

현행	개정(안)
<u>식, 조제유류 등에 적용한다.</u> 나. ~ 사. (생략)	다. 나. ~ 사. (현행과 같음)
2.2.2.17 (생략)	2.2.2.17 (현행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1 (생략)	9.1 (현행과 같음)
9.2 곰팡이독소	9.2 곰팡이독소
9.2.1 (생략)	9.2.1 (생략)
9.2.2 아플라톡신(B ₁ , B ₂ , G ₁ 및 G ₂) 가. 시험법 적용범위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곡류가공품 및 두류가공품, 장류, 고춧가루, 카레분, 육두구, 심황, 건조고추, 건조파프리카, 밀가루, 건조과일류,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u> 나. ~ 라. (생략)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 2) (생략) 3) 유도체화 용출액을 50℃에서 질소로 건조시키고 잔류물에 트리플루오로초산 0.2 mL를 가하여 어두운 곳에서 15분간 방치시킨 후	9.2.2 아플라톡신(B ₁ , B ₂ , G ₁ 및 G ₂) 가. 시험법 적용범위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곡류가공품 및 두류가공품, 장류, 고춧가루, 카레분, 육두구, 심황, 건조고추, 건조과일류,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u>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 2) (현행과 같음) 3) 유도체화 용출액을 50℃에서 질소로 건조시키고 잔류물에 트리플루오로초산 0.2 mL를 가하여 어두운 곳에서 15분간 방치시킨 후

현행	개정(안)
아세토니트릴·물(20:80, v/v) 혼합용액 0.8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0.45 μm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트리플루오로초산 0.1 mL와 아세토니트릴·물(20:80, v/v) 혼합용액 0.4 mL를 사용한다.</u> 바. 시험조자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가) ~ 라) (생략) 마) 주입량 : 10 μL(단,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주입량은 50 μL로 한다.</u>) 2) (생략) 사. ~ 아. (생략)	아세토니트릴·물(20:80, v/v) 혼합용액 0.8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0.45 μm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트리플루오로초산 0.1 mL와 아세토니트릴·물(20:80, v/v) 혼합용액 0.4 mL를 사용한다.</u> 바. 시험조자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입량 : 10 μL(단,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주입량은 50 μL로 한다.</u>) 2) (현행과 같음) 사. ~ 아. (현행과 같음)
9.2.3 아플라톡신 M ₁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원유, 우유류, 산양유, 조제유류,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u>	9.2.3 아플라톡신 M ₁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원유, 우유류, 산양유, 조제유류,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u>

현행	개정(안)
수조제식품 나. ~ 아. (생략) 9.2.3 ~ 9.2.5 (생략) 9.2.6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 곡류, 메주, 커피류, 고춧가루, 육두구, 심황(강황), 후추, 조미식품(육두구, 심황(강황) 또는 후추를 함유), 포도주스, 포도주스 농축액, 포도주, 건조과일류,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u> 나. ~ 라. (생략)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 4) (생략) 5)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u> (생략) 바. 시험조작 1) 기기 측정조건 가) ~ 마) (생략) 바) 주입량 : 5~20 µL (단,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u> 의 경우, 주입량은 50 µL로 한다.)	나. ~ 아. (현행과 같음) 9.2.3 ~ 9.2.5 (현행과 같음) 9.2.6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 곡류, 메주, 커피류, 고춧가루, 육두구, 심황(강황), 후추, 조미식품(육두구, 심황(강황) 또는 후추를 함유), 포도주스, 포도주스 농축액, 포도주, 건조과일류,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u>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 4) (현행과 같음) 5)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u> (현행과 같음) 바. 시험조작 1) 기기 측정조건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주입량 : 5~20 µL (단,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u> 의 경우, 주입량은 50 µL로 한다.)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사. ~ 아. (생략) 9.2.7 ~ 9.2.8 (생략) 9.2.9 아플라톡신(B ₁ , B ₂ , G ₁ , G ₂),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B ₁ , B ₂) 동시분석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 식물성 원료, 가공식품(단, 아플라톡신은 <u>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제외</u>) 나. ~ 아. (생략) 9.3 ~ 9.16 (생략) 10. ~ 12. (생략) [별표 1] ~ [별표 3] (생략)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417) (생략) (418) 피레트린(Pyrethrins) (생략) <u>포도</u> 1.0 ^T (419) ~ (432) (생략) (433) 피카뷰트라졸스(Picarbutrazox)	2) ~ 4) (현행과 같음) 사. ~ 아. (현행과 같음) 9.2.7 ~ 9.2.8 (현행과 같음) 9.2.9 아플라톡신(B ₁ , B ₂ , G ₁ , G ₂),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B ₁ , B ₂) 동시분석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 식물성 원료, 가공식품(단, 아플라톡신은 <u>조제식류, 영·유아용 이유식 제외</u>) 나. ~ 아. (현행과 같음) 9.3 ~ 9.16 (현행과 같음) 10. ~ 12.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417) (현행과 같음) (418) 피레트린(Pyrethrins) (현행과 같음) <u>포도</u> 0.4 [*] (419) ~ (432) (현행과 같음) (433) 피카뷰트라졸스(Picarbutrazox)

현행	개정(안)
(생략) <u>호박</u> 0.3 (434) ~ (444) (생략) 주1. ~ 주6. (생략)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생략) [별표 5] ~ [별표 7] (생략)	(현행과 같음) <u>호박</u> 0.15 (434) ~ (444) (현행과 같음) 주1. ~ 주6. (현행과 같음)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7] (현행과 같음)